저작권보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보호]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 1
1. 저작권보호 개관 4
1.1. 저작권보호 개요 4
1.1.1. 저작물 4
1.1.2. 저작자 7
1.2. 저작권 등록 등 8
1.2.1. 저작권 등록 8
1.2.2. 저작권 권리자 인증 13
1.3. 저작권위탁관리 14
1.3.1. 저작권위탁관리 14
2. 내 저작권 지키기 17
2.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17
2.1.1. 저작인격권 17
2.1.2. 저작재산권 19
2.2. 저작권 침해의 구제 23
2.2.1.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23
2.2.2.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25
2.2.3. 저작권 분쟁 조정 30
3. 저작물 이용하기 33
3.1.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33
3.1.1.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33
3.1.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33
3.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37
3.2.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37
3.2.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2
3.2.3.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44
3.2.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5
3.2.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46
3.2.6.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8
3.2.7.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51
3.2.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52
3.2.9. 그 밖의 저작물 이용 54

1. 저작권보호 개관

1.1. 저작권보호 개요

1.1.1. 저작물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물의 구분	내 용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
> ※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개념

▪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 ※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 ※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2항).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

▪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4항).

1.1.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의 추정

▪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1.2. 저작권 등록 등

1.2.1. 저작권 등록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개념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저작권 등록 절차

▪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다음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6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7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8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등록신청의 반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반려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

▪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3항).

▪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3,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5항).

권리 등록의 효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저작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 저작권에 대한 다음의 변경사항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7조제1항).

※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제1항).

권리변동 등록 절차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 구분	신청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다음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변동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6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7항).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을 한 등록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8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1.2.2.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권리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1.3. 저작권위탁관리

1.3.1. 저작권위탁관리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상담사례 참조).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참조).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epa.net)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www.kolaa.kr)
	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방송언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www.kobpra.or.kr)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www.kfpa.net)
공공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 저작권중개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 방법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2. 내 저작권 지키기

2.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1.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3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의 의의

▪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저작물의 공표 동의 추정·간주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2항).

▪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4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 의무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단서).

> **※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의 산문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제한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 **※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 ·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시 벌칙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1호).

2.1.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전시권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배포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 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
>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한다.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상담사례집>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기증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 및 부칙(법률 10807호) 제1조]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제2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2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본문).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단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함)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2항).

2.2. 저작권 침해의 구제

2.2.1.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제124조)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위의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위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가처분 신청

▪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또한,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 과실의 추정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6항).

> **※ 법정손해배상 청구**
>
> ·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8).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2항).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

√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2.2.2.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은 수거·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무력화기기"라고 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전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3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한국저작권보호원
-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5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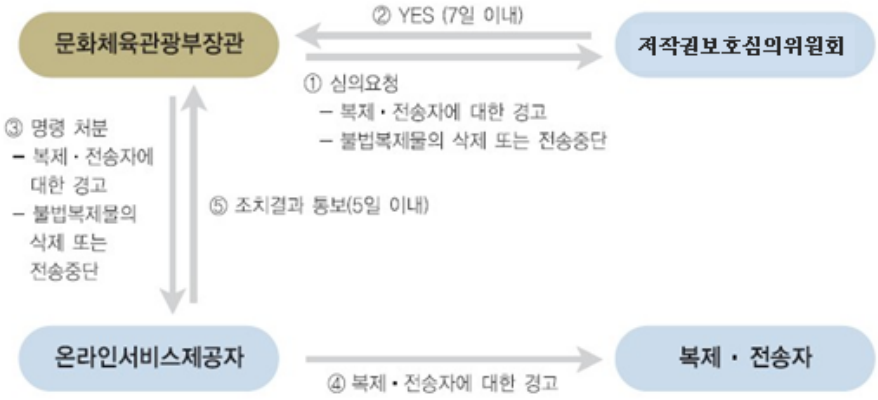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전단).

1.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위 1., 2.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음)
4.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및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7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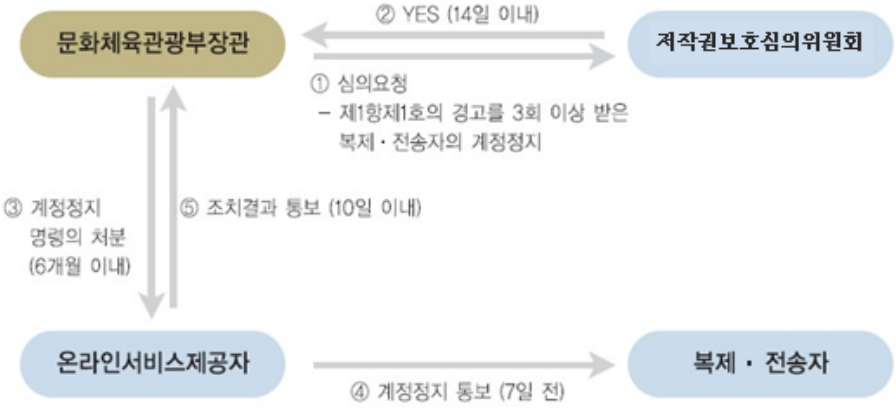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 계정 정지 기간(「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3항)

· 1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정 정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 복제·전송자의 계정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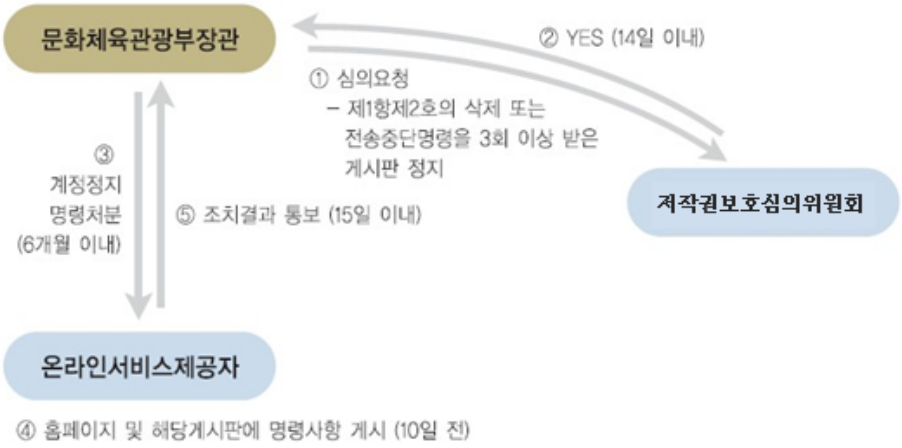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57호서식).

-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위법 행위의 내용
- 정지 기간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5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호·제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Q1.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조치를 권고하려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접속차단"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4.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위 1.부터 3.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1., 2., 4.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3.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2항).

Q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바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네,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2항 및 제5항).

위에 따른 심의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해야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 및 제7항).

또한,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8항).

2.2.3.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알선"의 개념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제4항).

▪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 **「민법」상 화해**
>
>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 ·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분쟁조정

▪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저작권법」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3항).

▪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4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5항).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3. 저작물 이용하기

3.1.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3.1.1.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2014 저작권 상담사례 100+, 122쪽 참고>

3.1.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 누구든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12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 절차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신청을 받으면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보상금 지급 사실 공고 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게시해야 합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보상금 금액
- 보상금 지급 근거
-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보상금 청구 절차

▪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함)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입증 자료
  -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승인연월일 등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2항).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2조).

승인절차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승인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의 경우만 해당)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 또는 음반제작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거나 상업용 음반제작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및 제52조).

▪ 보상금의 공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제3항).

3.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3.2.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기증전시관>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공유마당-공유마당소개-공유마당안내-기증저작물안내>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UCC를 제작하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 ·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가령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 ·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

CC 라이선스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라 함)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 이용허락조건

-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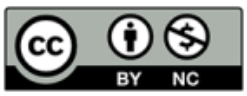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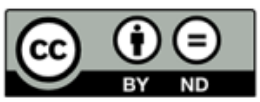
비영리 (Noncommercial)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출처: 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

▪ CC 라이선스 종류

종류	이용 조건	
	가능한 이용	제한된 이용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 표시 (CC BY)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일반증서 / 이용허락규약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참조: 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누리 홈페이지>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전단).

공공저작물의 이용

▪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 공공누리 저작물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선스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
>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
>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
>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출처 명시 의무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3.2.3.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다음의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동아리 모임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소수 인원이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사적 복제의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 '사적 복제'의 취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영세한 복제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일시적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

개인적 이용 목적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3.2.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요건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 그 밖의 방법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시사보도의 매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 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린다는 것은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 부수적, 우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인지 여부는 사회적 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취재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귀하의 미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과 같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

▹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복제·배포·공연 및 공중송신이 있으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외에 인터넷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 웹캐스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시사보도의 목적을 넘어선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
> 따라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

▪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3.2.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은 허용됩니다.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다음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라. 위 가.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에서 하는 공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쇼핑몰이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2018. 8. 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3.2.6.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됩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 요건(출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_저작물 이용신청_교육기관/도서관)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 "교과용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등이 포함됩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 교과용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 교과서에 저작물 게재 시 보상금은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과용 도서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수업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본문).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4항 단서).

▪ 위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5항).

※ 참고로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 학교·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수업지원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학교 등에서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을 위한 번역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및 제36조제2항).

3.2.7.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단서).

Q.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절차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번역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저작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출처 명시 의무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한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3.2.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아 복제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6호).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2항).

보상금 지급

▪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3항).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1항).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2항).

-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1항).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

▹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단서).

프로그램의 임치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2항).

3.2.9. 그 밖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에서 조사·연구, 보존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도서 등의 복제

▪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1. 및 3. 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단서).

> ※ **"도서관 등"의 개념**
>
> -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
>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및 특수도서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전송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2항 후단).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8항).

도서 등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

▪ 도서관 등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제1호)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②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본문).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단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1항).

▪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은 허용됩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해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 시각장애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동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33조제2항).

▪ 시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3항).

>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실연(實演)음반방송 또는 데이터 베이스(이하 "저자물등"이라 함)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촉각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2항).

▪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3항).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